



제 434회 국회 (임시회)
제5차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

검 토 보 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정〉
■ 박충권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7718호)

2026. 4.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수석전문위원 이복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4
1. 제정안의 체계	4
2. 총괄적 검토	5
3. 개별 검토	8

I. 제안경위

가. 발 의 자 : 박충권의원 등 10인

나. 발 의 일 : 2026. 3. 24.

다. 회 부 일 : 2026. 3. 25.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제안이유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의 규모가 2024년 기준 2,792억 달러에서 2030년에는 1조 8,118억 달러 규모로 연평균 35.9%의 성장률을 보일 것으로 예상되는 가운데 세계 주요국들은 글로벌 인공지능 시장을 위하여 이미 2017년부터 국가 단위 인공지능 개발 투자에 적극적으로 나서고 있는 등 전세계가 인공지능 기술 주도권을 선점하기 위한 치열한 경쟁을 벌이고 있음.

우리 정부에서도 인공지능 분야 글로벌 3대 강국으로의 도약을 발표하였고,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 제정되어 시행되는 등 국가적 노력을 경주하고 있으나, 글로벌 인공지능 시대의 핵심 인프라로서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 활성화에 대해서는 지원 법령이 중복되고 분산되어 있어 효율적이지 못하고, 실행계획이 명확하지 않아 사문화되고 있는 실정임.

특히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인터넷데이터센터나 클라우드센터와 구

분되는 고성능 인프라임에도 특수성이 반영되지 못하고 있으며, 일반 산업시설로 분류되어 입지 선정 및 전력 증설과 관련하여 행정적 병목이 발생하고 있음. 또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는 분산 인프라가 핵심임에도 이를 유도할 제도적 장치가 미비하며, 민간사업자가 개별적으로 데이터센터를 구축하고는 있으나 국가 차원의 인공지능 전략 산업 인프라로서의 위상 및 정책적 투자 유인은 부족한 상황임.

이에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관한 특례 조항 등을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을 위한 행정 절차를 효율화하며, 전력·용수·부지 등 기반 인프라를 안정적으로 확보하기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국가 차원의 종합적 지원체계를 마련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구축과 운영을 활성화하여 인공지능 반도체, 디지털 헬스케어, 데이터 산업과 연계될 수 있는 실질적 토대의 조성을 통한 경제 발전에 기여하려는 것임.

주요내용

가. 이 법은 인공지능기술 발전과 국가 경쟁력 강화의 핵심 기반 시설인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함으로써 인공지능 산업 경쟁력을 확보하고 국가 경제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함(안 제1조).

나.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안정적 구축 및 운영 환경을 조성하고 관련 기술 개발 및 산업을 육성하기 위한 종합적

인 시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에 필요한 전력, 용수, 부지 등의 기반 시설 확보를 위하여 노력하여야 함(안 제3조).

다.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을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 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위원회의 설치, 관계 기관의 협조, 실태조사,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운영·관리에 대한 기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5조부터 제10조까지).

라.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활성화를 위하여 인·허가 간소화, 금융 및 세제 지원, 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데이터 지원, 전문인력의 양성, 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해외 진출 지원, 전담기관의 지정, 의견수렴 절차,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11조부터 제21조까지).

마.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를 위하여 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및 지원, 규제개선의 신청 등에 관하여 규정함(안 제22조부터 제25조까지).

Ⅲ. 검토의견

1. 제정안의 체계

-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및 운영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이라는 제명(題名) 하에 총 4개 장 25개 조문으로 구성되어 있고, 시행일은 공포 후 1년이 경과한 날로 규정되어 있음.

제1장 총칙	
제1조(목적)	제14조(전력거래의 특례)
제2조(정의)	제15조(데이터 지원)
제3조(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제16조(전문인력의 양성)
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제17조(해외 사업자 유치·제휴 지원)
제2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기반 조성	제18조(해외 진출 지원)
제5조(기본계획 및 시행계획의 수립)	제19조(전담기관의 지정)
제6조(국가인공지능데이터센터진흥전문 위원회의 설치)	제20조(의견수렴 절차 마련 등)
제7조(전문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제21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다른 법률의 적용 특례)
제8조(관계 기관의 협조)	제4장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및 지역 활성화
제9조(실태조사)	제22조(비수도권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구축 지원)
제10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건축·운영 · 관리에 대한 기준)	제23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 지정)
제3장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활성화	제24조(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에 대한 지원)
제11조(인·허가 간소화)	제25조(규제 개선의 신청 등)
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제13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2. 총괄적 검토

- 데이터센터는 서버, 네트워크, 스토리지 등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에 필요한 장비를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로¹⁾,
특히 최근에는 인공지능산업의 급속한 발전으로 인공지능의 개발·활용 등에 이용되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이 부각되고 있음.
- 전세계 데이터센터 매출은 2023년 3,728억 달러에서 2029년 6,241억 달러로 성장할 것으로 전망됨²⁾.
- 그럼에도 불구하고 현재 데이터센터에 대한 구체적인 행정적·재정적 지원 근거가 마련되어 있지 않고,
오히려 데이터센터는 「건축법」상 방송국, 촬영소 등 다른 방송통신시설과 동일한 용도로 분류되어³⁾ 「주차장법」상 부설주차장 설치⁴⁾,

1) 「지능정보화 기본법」 제40조(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① 정부는 지능정보서비스의 제공을 위하여 다수의 초연결지능정보통신기반을 일정한 공간에 집적시켜 통합 운영·관리하는 시설(이하 “데이터센터”라 한다)의 안정적인 운영과 효율적인 제공 등을 위하여 데이터센터의 구축 및 운영 활성화 정책을 수립·시행할 수 있다.

2) 국회도서관, ‘글로벌 데이터센터 지형도’, “THE 현안” 2024-38호, 2024.12.18.

3) 제2조(정의) ② 건축물의 용도는 다음과 같이 구분하되, 각 용도에 속하는 건축물의 세부 용도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25. 방송통신시설

「건축법 시행령」 [별표 1] 용도별 건축물의 종류(제3조의5 관련)

24. 방송통신시설(제1종 근린생활시설에 해당하는 것은 제외한다)

가. 방송국(방송프로그램 제작시설 및 송신·수신·중계시설을 포함한다)

나. 전신전화국

다. 촬영소

라. 통신용 시설

마. 데이터센터

바. 그 밖에 가목부터 마목까지의 시설과 비슷한 것

4) 제19조(부설주차장의 설치·지정) 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에 따른 도시지역, 같은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관리지역에서 건축물, 골프연습장, 그 밖에 주차수요를 유발하는 시설(이하 “시설물”이라 한다)을 건축하거나 설치하려는 자는 그 시설물의 내부 또는 그 부지에 부설주차장(화물의 하역과 그 밖의 사업 수행을 위한 주차장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문화예술 진흥법」상 미술작품 설치⁵⁾ 등 소규모 전문인력으로 운영되는 데이터센터의 특성에 부합하지 않는 규제를 적용받고 있으며, 열섬현상, 전자파 우려 등으로 인한 인근 주민들의 반대로 데이터센터 건설이 무산되는 사례가 다수 발생하는 등⁶⁾,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중요성에도 불구하고 그 구축이 원활하지 못한 측면이 있음.

- 이에 제정안은 인공지능데이터센터 관련 추진체계를 마련하고,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설치·운영과 관련하여 기술적·행정적·재정적 특례를 도입하며, 인공지능데이터센터 특구를 조성함으로써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체계적인 구축과 운영을 지원하고 관련 산업의 진흥을 도모하려는 것임.
- 다만 최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이하 “인공지능기본법”)이 제정되었고, 해당 법률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관한 사항도 포함되어 있는 만큼 법률 간 정합성에 대해 면밀히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례적 성격의 규정의 경우 다른 법률과의 정합성 및 타 산업과의 형평성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도입 여부를 결정할 필요가 있음.
- 즉, 인공지능기본법의 체계 보완, 일부개정 등을 통해 제정안의 취지를 답을 수 있는지 우선적으로 검토하는 등 입법경제적 측면을 감안하여

5) 제9조(건축물에 대한 미술작품의 설치 등) ①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류 또는 규모 이상의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이하 “건축주”라 한다)는 건축 비용의 일정 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사용하여 회화·조각·공예 등 건축물 미술작품(이하 “미술작품”이라 한다)을 설치하여야 한다

6) 노진균, “갈 곳 잃은 도심 속 데이터센터...주민 반대 해법 찾을까”, 파이낸셜뉴스, 2024.9.1.

살펴야 할 것으로 보임.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특수성을 반영한 지원체계 마련의 필요성에 공감하면서도, 법체계 정합성 및 정책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하여 일부 조문의 수정 및 신설이 필요하다는 입장임.
- 참고로, 제명과 취지·내용이 유사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 진흥 및 기반 조성에 관한 법률안」 등 6개 법률안을 통합·조정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산업 육성에 관한 특별법안」(대안)이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에서 의결되어 체계·자구심사를 위하여 법제사법위원회에 계류 중이므로, 기 발의된 제정안 및 계류 중인 대안과 동 제정안의 차이를 중심으로 검토하겠음.
- 보다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이하의 조문별 검토에서 논의함.

3. 개별 검토

가. 정의(안 제2조)

(1) 제정안 요지

-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및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에 대하여 정의함(안 제2조).

(2) 제정안 조문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 “인공지능”이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인공지능을 말한다.
2. “인공지능데이터센터”란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 제25조제1항에 따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말한다.
3.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이하 “인프라”라 한다)”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하드웨어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목의 것을 말한다.
 - 가. 컴퓨팅 인프라: 인공지능 연산용 서버 시스템,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인공지능 가속기, 반도체 및 그 부속 장비
 - 나. 에너지 인프라: 인공지능 서버 가동을 위한 고밀도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저장 설비
 - 다. 냉각 인프라: 고집적 서버의 발열 제어를 위한 액체 냉각 등 첨단 냉각 설비
 - 라.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3) 검토사항

- 안 제2조는 제정안에서 사용되는 용어인 ‘인공지능’ 및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의미를 분명히 규정하려는 것임.
-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의 정의의 경우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에 필수적인 설비 투자를 지원하는 본칙 규정을 뒷받침하기 위해 새로운 용어를 정의한 것으로 보임.
- 다만,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인프라(이하 “인프라”)의 정의가 사용되는 조문은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으로 별도의 정의 규정을 두기보다는 안 제12조제4항에서 조세감면이 가능한 대상을 각 호로 규정하도록 수정하는 것이 정의 규정의 취지에 부합할 것으로 보임.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수정 조문 예시>

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기능을 수행하기 위한 필수적인 하드웨어 및 설비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을 갖춘 다음 각 호의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다.

1. 컴퓨팅 인프라: 인공지능 연산용 서버 시스템, 그래픽처리장치(GPU), 신경망처리장치(NPU) 등 인공지능 가속기, 반도체 및 그 부속 장비
2. 에너지 인프라: 인공지능 서버 가동을 위한 고밀도 전력 공급 및 에너지 저장 설비
3. 냉각 인프라: 고집적 서버의 발열 제어를 위한 액체 냉각 등 첨단 냉각 설비
4. 그 밖에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고도화 및 안정적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설비로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정하는 설비

⑤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인프라 시설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 또한, 안 제2조제3호 본문에서는 인프라의 구체적인 요건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는데 같은 호 라목은 인프라의 범위를 과학기술정보통신부령으로 추가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어 부령으로 정한 설비에 대한 세부 요건을 상위규범인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되므로 법체계상 하위 규범 간의 적용 관계가 적절한지 검토가 필요함.

나. 인프라 투자 세제 지원(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

(1) 제정안 요지

-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을 할 수 있음(안 제12조 제4항).
-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인프라 시설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음(제5항).

(2) 제정안 조문

제12조(금융 및 세제 지원 등) ④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인프라를 구축하거나 관련 시설에 투자하는 사업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세액공제 등 조세 감면을 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세액공제 적용 시, 인프라 시설 투자는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에 투자한 것으로 보아 우대 세율을 적용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2조제4항 및 제5항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인프라 구축 또는 관련 시설 투자에 대하여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라 조세감면을 적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에 대한 우대세율을 적용⁷⁾하도록 규정함.

- 인공지능 제품·서비스의 개발 및 상용화에 필요한 대규모 데이터 처리를 감당하기 위해서는 적극적인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구축 및 인프라 시설 투자가 필요한데 민간의 투자를 촉진하기 위하여 세제 혜택을 부여할 필요성은 인정됨.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지방자치단체가 부과·징수하는 지방세의 감면에 대해서는 「조세특례제한법」이 아닌 「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므로 「조세특례제한법」과 함께 「지방세특례제한법」을 명시하는 방향으로 수정이 필요함.
- 또한, 현행법상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세제 지원은 「조세특례제한법」⁸⁾이나 「지방세특례제한법」⁹⁾ 등 조세 관계법의 개정을 통해서

7)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내국인이 제1호가목 또는 나목에 해당하는 자산(중고품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임대용 자산은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투자(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리스에 의한 투자는 제외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하는 경우에는 제2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 또는 제3호 각 목에 따른 기본공제 금액과 추가공제 금액을 합한 금액을 해당 투자가 이루어지는 과세연도의 소득세(사업소득에 대한 소득세만 해당한다) 또는 법인세에서 공제한다. 이 경우 제2호 및 제3호를 동시에 적용받을 수 있는 경우에는 납세의무자의 선택에 따라 그 중 하나만을 적용한다.

2. 공제금액

가. 기본공제 금액: 해당 과세연도에 투자한 금액에 다음의 구분에 따른 비율을 곱한 금액에 상당하는 금액

2)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및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하 이 조에서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에 2029년 12월 31일까지 투자하는 경우[3]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

가) 중소기업의 경우: 100분의 25

나) 중소기업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경우로서 최초로 중소기업에 해당하지 아니하게 된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3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의 경우: 100분의 20

다) 가) 및 나) 외의 경우: 100분의 15

8) 「조세특례제한법」

제3조(조세특례의 제한) ①이 법, 「국세기본법」 및 조약과 다음 각 호의 법률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조세특례를 정할 수 없다. (각호생략)

만 가능하므로, 제정안에 세제 지원에 관한 규정을 두는 것은 실익이 낮을 수 있다는 점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추가로, 안 제12조제5항은 인프라 시설 투자를 「조세특례제한법」에 따른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 투자로 간주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도록 하고 있음.
- 「조세특례제한법」 제24조에 따르면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의 구체적인 범위와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제4항제2호 가목은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을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¹⁰⁾로 규정함.

9)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조(지방세 특례의 제한) ① 이 법, 「지방세기본법」, 「지방세징수법」, 「지방세법」, 「조세특례제한법」 및 조약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지방세법」에서 정한 일반과세에 대한 지방세 특례를 정할 수 없다.

10)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

제21조(통합투자세액공제) ④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1) 가)부터 라)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같은 목 3)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 및 같은 항 제3호가목 3)다)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각각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설을 말한다.

2. 법 제24조제1항제2호가목2) 가)부터 다)까지 외의 부분의 시설: 다음 각 목의 시설

가. 국가전략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 다음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이라 한다)

1)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품을 생산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생산하는 제품 외에 다른 제품의 생산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2) 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설로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국가전략기술을 사용하여 제공하는 서비스 외에 다른 서비스의 제공에도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

나.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 제25조의3제3항제2호가목의 시설 중 국가전략기술 연구개발을 위한 연구·시험용 시설(국가전략기술 외에 다른 기술의 연구개발에도 사용되는 시설과 일시적으로 사업화를 위해 사용되는 시설을 포함한다)로서 연구개발세액공제기술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재정경제부장관과 산업통상부장관이 공동으로 인정하는 시설(이하 "국가전략기술연구개발시설"이라 한다)

- 그리고,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제2항에 따라 같은 시행규칙 별표 6의2에서 국가전략기술별로 사업화 시설을 구체적으로 분류¹¹⁾하고 있으며 현재 서버, 스토리지 전력공급시설, 냉각시설 등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관련 시설이 일부 포함되어 있음.

<국가전략기술사업화시설 중 인공지능 시설(「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별표 6의2)>

8. 인공지능	인공지능 분야 국가전략기술 공통	영 별표 7의2 제8호 각 목의 기술이 적용된 인공지능의 서비스 제공을 주된 목적으로 활용되는 서버(GPU, NPU를 포함한다), 스토리지, 전력공급시설, 공기조화시설, 냉각시설 등 「지능정보화 기본법 시행령」 제27조제1항 제1호에 따른 시설 및 이와 연계된 「전기통신사업 회계정리 및 보고에 관한 규정」 제8조에 따른 전기통신설비
---------	----------------------	--

- 그런데, 특정 시설을 국가전략기술 사업화 시설로 인정하여 우대세율을 적용하는 것은 「조세특례제한법」 및 그 관계 법령의 규정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를 다른 개별법에서 별도로 규정하는 것은 법체계상 적절하지 않을 뿐 아니라 법규 적용상 혼선을 발생시킬 우려가 있음.
- 특히, 국가재정의 건전성과 세수 확보의 안정성을 위해 「조세특례제한법」에서 명시적으로 규정하지 않고는 개별법에서 조세감면을 적용

11) 「조세특례제한법 시행규칙」

제12조의2(신성장·원천기술의 사업화를 위한 시설의 범위 등) ② 영 제21조제4항제2호가목1)에서 "재정경제부령으로 정하는 시설"이란 별표 6의2 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시설을 말한다.

할 수 없도록 한 「조세특례제한법」의 취지를 고려할 때, 조세감면에 관한 사항은 「조세특례제한법」으로 엄격하게 규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현행법 체계에서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에 명시되지 않은 개별법에서 조세·지방세 관련 규정을 금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하여 제정안에 세제 지원 근거를 두는 것은 신중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재정경제부와 행정안전부는 각각 국세 및 지방세에 대한 세제 혜택을 「조세특례제한법」 및 「지방세특례제한법」이 아닌 개별법에서 규정하는 것은 법적용의 혼란을 야기할 우려가 있어 관련 조문을 삭제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다. 전기요금 감면 및 전력거래 특례(안 제13조제2항 및 제14조)

(1) 제정안 요지

-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할 수 있음(안 제13조 제2항).
- 비수도권에 지정된 특화지역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음(제14조).

(2) 제정안 조문

제13조(전력 및 용지·용수 확보 지원 등) ② 「전기사업법」 제2조제10호에 따른 전기판매사업자는 인공지능데이터센터의 운영 효율화를 위하여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하여 전기요금을 감면할 수 있으며, 별도의 전기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을 정할 수 있다.

제14조(전력거래의 특례) 비수도권에 지정된 특화지역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업법」 제2조제4호에 따른 발전사업자로부터 직접 전기를 공급받을 수 있다. 이 경우 요금 및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은 발전사업자와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 간의 협의에 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3) 검토사항

- 안 제13조제2항은 전기판매사업자가 전기를 판매할 때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사용하는 전기에 대해서는 요금을 감면할 수 있도록 하여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발생하는 전기요금 부담을 줄여주려는 것임.
- 현행 「전기사업법」은 전기판매사업자(한국전력공사)가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기본공급약관)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도록¹²⁾ 하고 있음.
- 이에 따라, 현재 한국전력공사의 기본공급약관에 따르면 계약종별은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되며¹³⁾, 지역별·산업별로 전기요금을 차등하여 부과하고 있는 않음.
- 그리고, 안 제14조는 비수도권에 소재한 인공지능데이터센터가 안정적으로 전기를 공급해 줄 수 있는 발전사업자를 자체적으로 찾아 유리한 조건으로 전력구매계약을 체결할 수 있도록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한 직접전력거래(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허용하려는 것임.

12) 제16조(전기의 공급약관) ① 전기판매사업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이하 “기본공급약관”이라 한다)을 작성하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의 인가를 받아야 한다. 이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13) (한국전력공사) 기본공급약관 제55조(계약종별의 구분) 계약종별은 전기사용계약단위의 전기사용 용도에 따라 주택용전력, 일반용전력, 교육용전력, 산업용전력, 농사용전력, 가로등, 예비전력, 임시전력으로 구분합니다.

- 「전기사업법」에 따르면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전력거래소가 정하는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¹⁴⁾를 하는 것이 원칙이며 이는 발전사업의 정의¹⁵⁾에도 반영되어 있음.
- 예외적으로 「전기사업법」에 따른 구역전기사업자¹⁶⁾,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¹⁷⁾,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¹⁸⁾는 요건을 충족하면 전력시장을 거치지 않고 전기사용자와 직접 전력을 거래하는 계약(Power Purchase Agreement; PPA)를 체결할 수 있음.
- 또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은 분산에너지특화지역에 분산에너지설비를 둔 분산에너지사업자에게 특화지역 내에서 전기사용자와 직접 PPA를 체결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¹⁹⁾하고 있음.

14) 제31조(전력거래) ① 발전사업자 및 전기판매사업자는 제43조에 따른 전력시장운영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전력시장에서 전력거래를 하여야 한다. 다만, 도서지역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5)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3. "발전사업"이란 전기를 생산하여 이를 전력시장을 통하여 전기판매사업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16) 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뜻은 다음과 같다.

11. "구역전기사업"이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하의 발전설비를 갖추고 특정한 공급구역의 수요에 맞추어 전기를 생산하여 전력시장을 통하지 아니하고 그 공급구역의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하는 것을 주된 목적으로 하는 사업을 말한다.

제16조의3(구역전기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등) ① 구역전기사업자는 사고나 그 밖에 기후에너지환경부령으로 정하는 사유로 전력이 부족하거나 남는 경우에는 부족한 전력 또는 남는 전력을 전기판매사업자와 거래할 수 있다.

17)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① 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및 재생에너지전기저장판매사업자는 재생에너지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18) 제16조의5(재생에너지전기공급사업자 등의 전기공급) ②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는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경우에 생산한 전기를 전력시장을 거치지 아니하고 전기사용자에게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송전제약발생지역전기공급사업자의 전기 공급에 관한 세부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1. 송전제약으로 발전설비의 최적 활용이 곤란한 지역에 위치한 발전설비를 이용하여 생산한 전기를 공급할 것
2. 전기사용자의 수전설비가 발전설비 인접지역에 위치하고 신규 시설일 것

19) 제43조(분산에너지사업자와 전기판매사업자의 전력거래) 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내에 발전설비를 설치한 분산에너지사업자는 「전기사업법」에도 불구하고 분산에너지특화지역 안에서 같은 법 제2조제13호에 따른 전력시장(이하 이 조에서 "전력시장"이라 한다)을 거치지 아니하

- 제정안은 전기를 다량으로 소비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의 특성을 고려하여 전기요금 감면 근거를 마련하고 직접전력거래가 가능하도록 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운영 과정에서 전기를 원활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하려는 것임.
- 다만, 제정안은 다음과 같은 사항을 고려할 필요가 있음.
- 먼저, 전기요금은 전기판매사업자인 한국전력공사가 정하는 것으로 개법법에 특정 대상이 소비하는 전기에 대한 요금 인하의 근거를 명시할 경우 한국전력공사가 기업의 자율적인 판단에 따라 탄력적으로 전기요금 체계를 운영하는 것에 어려움이 발생할 가능성은 없는지 논의가 필요함.
- 또한,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²⁰⁾ 및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²¹⁾에 따라 전기요금은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방식으

고 직접 전기사용자에게 전기를 공급할 수 있다. 이 경우 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 등을 개별적으로 협의하여 계약할 수 있다.

20) 「전기사업법 시행령」

제7조(기본공급약관에 대한 인가기준) ① 법 제16조제1항에 따른 전기요금과 그 밖의 공급조건에 관한 약관에 대한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전기요금이 적정 원가에 적정 이윤을 더한 것일 것
2. 전기요금을 공급 종류별 또는 전압별로 구분하여 규정하고 있을 것
3. 전기판매사업자와 전기사용자 간의 권리의무 관계와 책임에 관한 사항이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4. 전력량계 등의 전기설비의 설치주체와 비용부담자가 명확하게 규정되어 있을 것

② 제1항 각 호에 따른 인가 또는 변경인가의 기준에 관한 세부적인 사항은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21) 「발전사업세부허가기준, 전기요금산정기준, 전력량계허용오차 및 전력계통운영업무에 관한 고시」

제11조(요금수준) ① 전기요금은 전기공급에 소요된 취득원가 기준에 의한 총괄원가를 보상하는 수준에서 결정하는 것을 원칙으로 하되, 전기사업자의 경영효율성을 제고하기 위한 유인규제 방식을 시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총괄원가는 성실하고 능률적인 경영하에서 전력의 공급에 소요되는 적정원가에 이에 공여하고 있는 진실하고 유효한 자산에 대한 적정투자보수를 가산한 금액으로 한다.

로 정해지므로 특정 대상에 대한 전기요금이 감면될 경우 일반 국민에게 적용되는 다른 전기요금(주택용·일반용 등)에 대한 인상 압력으로 작용할 우려가 있음.

- 그리고, 현재 한국전력공사가 특정 산업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특례 제도는 운영하고 있지 않음을 고려할 때, 인공지능데이터센터에 대해서만 전기요금을 감면할 경우 다른 산업과의 형평성 문제가 제기될 가능성이 있다는 점도 감안할 필요가 있음.
- 마지막으로, 우리나라는 전기판매사업을 공기업인 한국전력공사가 실질적으로 독점하고 있는 상황으로 직접 PPA는 현재 재생에너지 확대나 분산에너지 활성화 등 특별한 목적이 있는 경우에 한해 예외적으로 허용하고 있으며, 직접 PPA의 확대는 필연적으로 전력판매시장의 일부 민간 개방으로 이어질 수 있음.
- 특히, 개별 사업자는 전기공급 단가가 저렴한 발전사업자와 거래계약을 체결할 유인이 있어 석탄, 원자력과 같이 발전단가가 상대적으로 저렴한 발전소를 중심으로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사업자의 직접 전력거래 계약이 체결될 가능성이 있는데,

이를 통해 저렴한 발전원이 전력시장에서 빠지게 되면 전력시장을 통해 공급되는 일반적인 전기요금에 대한 상승 압력이 발생할 수 있으므로 이에 대한 면밀한 검토가 필요해 보임.

③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유인규제 방식의 경우, 물가상승률과 전기판매 사업자의 생산성 향상 목표 등을 감안하여 조정한다.

- 추가로, 안 제14조는 전력거래의 특례를 비수도권에 지정된 “특화지역” 내 인공지능 데이터센터를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는데, 동 제정안에는 특화지역이라는 용어 혹은 제도가 사용되지 않으므로 이를 제정안에서 규정하고 있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 특구로 수정할 필요가 있음.
-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발전원별 특성과 직접전력거래가 전력시장 및 전기요금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하여 재생에너지와 LNG(비수도권) 발전설비에 한정하여 직접전력거래를 허용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 기후에너지환경부는 특정 대상에 대한 전기요금 감면 등은 형평성 논란 및 일반사용자의 전기요금 인상 우려가 있으므로, 요금 감면보다는 재정지원 형태로 검토할 필요가 있고,

특정 소비자에게 직접전력거래를 허용하는 것은 다른 사용자와의 형평성 논란을 야기하고 일반사용자의 전기요금 인상 압박으로 이어질 우려가 있으므로 「분산에너지 활성화 특별법」의 체계에서 엄격한 검토를 거쳐 규정할 필요가 있다는 입장임.

문 의 처

02)6788-5230